



화학물질 사고예방

환경미화원 종사 사업장의 세척시설 설치 기준



2016-교육미디어-919



재해사례

- 음식물 쓰레기의 피부 접촉과 비위생적 피부 관리로 인한 피부 손상
- 선별작업시 감염성질환 유발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한 피부질환 발생



작업 공정

- 생활폐기물, 음식물 쓰레기, 대형폐기물, 재활용품 등의 수집·운반·청소 등

유해 · 위험요인

- 감염성 위험요인
 - 혈액이 묻어있는 폐기물 등
- 근골격계질환 위험
 - 중량물로 인한 과도한 힘의 사용, 또는 허리나 목을 숙이거나 측면으로 기울이는 자세,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거나 몸통에서 떨어지는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
- 손상 위험요인
 - 깨진 유리나 날카로운 물체 등

환경미화원 종사 사업장의 안전대책 및 수칙

세척공간은 세면(목욕), 세탁, 탈의가 가능해야하며 가급적 동일 공간내에 배치

+ 주요 점검항목 체크리스트

구분	점검항목	점검여부		담당자확인
		○	×	
시설구분	세척시설내 세면(목욕), 세탁, 탈의시설 구비			
세면/목욕시설 (샤워실)	환경미화원이 사용 가능한 세면·목욕실(샤워실) 구비			
	성별에 따른 사용공간의 구분			
	동시 사용 근로자 수를 고려한 샤워꼭지 및 세면대 개수의 적절한 설치			
	환기를 위한 창이나 환풍시설의 설치			
	실내 조도가 200Lux를 준수하는지 여부			
	세면/목욕실(샤워실)의 물빠짐이 용이한지 여부			
	청결한 관리			
	세면·목욕시설 내 임시 수납장의 구비			
	비누/세정제, 수건(개인별), 핸드타월/건조기 등 비치 여부, 정기적인 물품 교체 같은 적절한 관리실태 여부			
세탁시설	별도의 세탁공간 구비			
	동시 사용 근로자 수에 적합한 세탁기 대수 비치			
	빨래 건조대 및 건조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인			
	세탁실의 물빠짐이 용이한지 여부			
	세탁시설의 지속적이고 청결한 관리			
	세탁에 필요한 세제 및 비품 비치			
	세탁실 적정 조도인 200Lux를 준수하는지 여부			
	작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, 샤워시설이 딸린 세탁시설 설치			
	고온 및 저온 또는 따뜻한 물의 적절한 공급 여부			
탈의시설	청결하고 정돈된 탈의시설 유지			
	잠금장치를 설정할 수 있는 개인사물함 비치			
	성별에 따른 사용공간의 구분			
	적정 조도인 200Lux를 준수하는지 여부			
	실내적정온도 유지			
	환기용 창이나 기계식 환기설비 비치			



참고 법령 및
작성 기준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2항 (세척시설 등), 제560조 (온도·습도 조절), 제565조 (가습)
- 안전보건기술지침 H-175-2015 (환경미화원 종사 사업장의 세척시설에 관한 기술지침)